

1. 개정이유

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」 개정(2023.12.26)으로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의 75퍼센트 범위 내에서 임대주택을 공급하던 것을 분양주택으로도 공급할 수 있게 됨.

그러나, 현행 「재정비촉진사업의 임대주택 공급가격의 산정 기준」은 임대주택에 대해서만 규정되어 있어 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」에 맞추어 분양주택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등 수정할 필요가 있음.

2. 주요내용

- 가. 재정비촉진지구 내 용적률 완화 시 제공 주택 유형에 분양주택 추가
(안 제1조)
- 나. 용적률 완화에 따라 제공되는 임대주택 및 분양주택의 주택가격 규정(안 제2조, 제3조)
- 다. 제3조 신설에 따른 조문 이동(안 제4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」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- 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

재정비촉진사업의 임대주택 공급가격의 산정 기준 일부개정고시안

재정비촉진사업의 임대주택 공급가격의 산정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재정비촉진사업의 임대주택 공급가격의 산정 기준”을 “재정비촉진사업 임대주택 등의 공급가격 산정 기준”으로 한다.

제1조 중 “임대주택을”을 “임대주택 및 분양주택을”로, “임대주택의 공급가격”을 “가격”으로 한다.

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조(임대주택 가격) 법 제31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임대주택의 건축비는 「공공주택 특별법」 제50조의4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로 한다.

제3조를 제4조로 하고,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조(분양주택 가격) 법 제31조제3항제2호에 따른 분양주택의 건축비는 「주택법」 제57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본형건축비로 한다.

부 칙

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재정비촉진사업의 임대주택 공급가격의 산정 기준</u></p> <p>제1조(목적) 이 기준은 「도시재 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」 제31 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 비촉진사업의 시행자가 <u>임대주 택을</u> 인수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<u>임대주택의 공급가격</u>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주택가격) 임대주택의 건축 비는 임대주택법시행규칙 별표 1의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<u>공공건설임대주택의 표준건축 비를</u> 기준으로 한다.</p> <p><신 설></p> <p>제3조 (생 략)</p>	<p><u>재정비촉진사업 임대주택 등의 공급가격 산정 기준</u></p> 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 <u>임대주택 및 분양주택을</u> ----- <u>가격</u>----- -----.</p> <p>제2조(임대주택 가격) 법 제31조 <u>제3항제1호에</u> 따른 임대주택의 건축비는 「<u>공공주택 특별법</u>」 <u>제50조의4에</u>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<u>고시하는 공공건설임대 주택의 표준건축비</u>로 한다.</p> <p>제3조(분양주택 가격) 법 제31조 <u>제3항제2호에</u> 따른 분양주택의 건축비는 「<u>주택법</u>」 제57조제 4항에 <u>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본형건축비</u>로 한다.</p> <p>제4조 (현행 제3조와 같음)</p>